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협정 당사국들 간의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¹⁾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의 당사국들은 아래 사항을 양해하였다.

(가) 제1조(정의)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제1조거항(1)호의 “수익적 소유”라는 문구가 아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1) 필리핀이 1987년 필리핀 헌법(필리핀 공화국 헌법), 개정 연방법 제108호, 즉 안티더미법(일정 권리, 특허 또는 특권의 국유화에 관한 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 베타스 팜반사 빌랑 68(필리핀 기업법), 공화국법 제386호(필리핀 민법을 규정하고 제정하기 위한 법) 및 공화국법 제8179호(공화국법 제7042호를 개정하고, 기타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자유화하기 위한 법)와 불합치하는 법인의 소유권을 허용함.

(2) 베트남이 민법 제33/2005/QH11호(2005.6.14일자), 기업법 제60/2005/QH11호(2005.11.29일자), 투자법 제59/2005/QH11호(2005.11.29일자) 및 유가증권법 제70/2006/QH11호(2006.6.29일자)와 불합치하는 법인의 소유권을 허용함.

(나) 제13조(일반적인 예외)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제13조라항과 각주 7 하의 조세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추가적인 협상의 대상임을 양해한다, 그리고,

(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항(금융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대하여, 금융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 안정성에 관한 제2항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상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취하는 것으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1) 당사국들은 태국 왕국이 의회의 절차를 종료하면 이후에 서명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이 양해각서는 서비스무역협정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고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007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장관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참 프라시디
수석 장관 및 상무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마리 엘카 팡제스투
통상장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 비야케스
상공장관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장관

미얀마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우 소에 타
국가기획경제개발장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피터 B. 파빌라
통상산업장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림 흥 키앙
통상산업장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휘 황
통상장관